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11.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12. 1.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정순옥 의원 등 6명
- 발의일자: 2025. 11. 14.(금)
- 회부일자: 2025. 11. 14.(금)
- 검토기간: 2025. 11. 14.(금) ~ 11. 21.(금)

2. 제정이유

- 본 일부개정조례는 아동친화모니터단의 제안을 바탕으로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며,
- 놀이공간 안전관리와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강화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아동친화도시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놀이공간의 안전 관리를 규정하고, 취약계층 아동들이 공평하게 놀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안 제7조제2항, 제3항 신설)

4. 검토의견

- 아동의 올바른 성장과 정당한 휴식권을 포함한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91.11.20. 비준)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로, 우리나라는 유니세프 어린이 웰빙지수(OECD 및 EU) 조사에서 2020년 38개국 중 21위였으나, 2025년 36개국 중 27위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아동 권리협약에 따라 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실질적인 정책에 아동의 의견반영을 위해 ‘놀이공간의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내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
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
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
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
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
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5조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아동 참여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